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의 현황 및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Standards of the Public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배 경 재 (Kyung-Jae Bae)*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선행 연구
2.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2.1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2.2 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2.3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결과
3. 국내장애인도서관 기준 관련 운영현황 분석
4.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제
5. 결 론

초 록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실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기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을 분석한 결과 법적 기준과 관련 기관의 운영기준 모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과제는 우선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최소기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최소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및 평가지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평가업무 연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준 적용의 당사자인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이용자의 의견 수렴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alistic guidelines of the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should be made in the circumstance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through investigation of guidelines of the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on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As the results of those investiga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legal standard and related guidelines should be amended urgently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ibrary situation. The first Issue that was derived in this study is to separate consideration of the minimum standards and the detailed criteria of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Secondly, the guidelines of the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should be linked statistics and evaluation index of government in order to be applied to the library spot realistically. To do so,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opinions of the library for the disabled and the disabled users should be reflected through listening and communications.

키워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서비스 기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평가지표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Service Guidelines, Public Library, Library for the Disabled, Evaluation Index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jbae@dongduk.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5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1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379-400,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4.379]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도서관이 사회의 중요한 문화·복지 시설 중 하나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문화적으로 완화시키고, 사회적 약자 계층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관으로써 도서관의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주요 책무로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으로 정의하고 도서관이 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배경재 2015).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화의 과정에서 생존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이다. 장애인이 사회의 보편적인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 해소를 임무로 하는 도서관이 장애인에게 활용 가능한 지식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도서관장애인서비스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13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조사(2013)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서비스 이용건수가 2009년 2,003건에서 2010년 3,633건, 2011년 5,177건, 2012년 6,261건으로 미약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장애인서비스 이용기반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008년 644개관에서 2012년 828개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2018년까지 매년 50개관을 신규로 건립하여 1,100개관을 달성할 계획이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달리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정보서비스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4년말 기준 약 250만 명에 달하지만, 전국의 장애인도서관 39개관 중 독립 건물과 운영체계를 갖춘 곳은 8개관뿐이고,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장애인자료실(코너)은 268개관(34%)에 불과한 상황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12). 누구보다 지식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취약계층 도서관 인프라는 매우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아직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대상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강숙희 2011). 장애인들에게 만족스러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하는 국내 도서관들이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

www.kci.go.kr

관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영기, 이연옥 2008).

특히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이용을 유도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물리적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정보 이용을 위한 어떠한 불편도 제거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기준에 따라 최대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은 공공도서관을 통한 정보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보일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현실의 부조화에 주목하여 점차 확충되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인프라에서 장애인이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기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을 설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으며 주로 시각장애인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었다(강숙희 2011). 도서관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용자 요구조사와 서비스 실태조사, 관련 정책제언 등의 범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용자 요구조사의 경우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정량적 연구방법(설문조사)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오다 최근 들어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2013)의 연구와 장보성(2015)의 연구에서 보듯이 다양한 장애 유형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면담 등의 정성적 기법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2013)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와 면접을 통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장보성(2015)은 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같은 정량적 연구방법으로는 이용욕구를 세밀히 파악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간 장애인 서비스 연구의 규모와 추이를 고려할 때 아직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장애유형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모형,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과 같이 거시적인 정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윤(2012)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장덕현(2012)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주류사회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박종배(2013)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서비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장애인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러 장애인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

www.kci.go.kr

구의 추이를 고려할 때, 아직 국내 도서관장애인 서비스의 발전이 초기 단계로서 기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 모형 및 정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준 관련 연구로는 김영기, 이연옥(2008)의 연구가 유일한 실정이다. 김영기, 이연옥(2008)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과 국제도서관연맹(IFLA), 미국도서관협회(ALA) 등 외국기관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각종 지침과 정책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도서관들이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지침과 기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성요소는 도서관내외부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 접근 가능 장서 구축, 서비스와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웹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인력자원의 개발과 활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일곱 가지로 유형화시켰다. 그러나 이 기준안은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제언하는 수준이며, 실제로 각 구성요소의 실제적 기준(인력, 시설, 독서보조기기의 구성방안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배경재(2014)는 '장애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이 미비한 점을 언급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김보일(2006)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그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장애인 편의시설별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 기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고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공공 건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세부 편의시설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현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참고할만한 국내외 주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 제시된 기준들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존재하므로,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기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1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2.1.1 도서관법 시행령

국내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한 유일한 법적 기준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인력 배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이 기준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이 아닌 장애인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운영기준으로 참고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관련 장애인 서비스의

www.kci.go.kr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기준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은 이 시행령이 유일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운영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가 되는 법적 기준이기도 한다. 이 시행령의 주요 한계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 한정한다는 점에 있으며, 또한 청각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같은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추후 개정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에서 참고할만한 점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시설에 대한 사항이다. 장애인도서관의 기계·기구로서 점자제판기(1대 이상), 점자인쇄기(1대 이상), 점자타자기(1대 이상), 녹음기(4대 이상)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매체 제작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성독서기, 화면낭독기, 독서확대기와 같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자료 및 사서 배치기준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장서 1,500권 이상, 녹음테이프 500점 이상 및 사서 인력 1명 배치로 기준을 정의하여 오히려 소규모 장애인도서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녹음테이프를 반드시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여서 최근 디지털 음성도서 위주의 대체자료 이용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정량적 운영기준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하되, 필요한 대체자료의 구성 및 독서보조기기의 유형, 수량 등을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2.1.2 한국도서관기준(2013)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3년에 개정한 한국도서관기준은 장애인도서관의 운영기준에 대해 다소 제한적인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www.kci.go.kr

상세화하고,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으로 한정된 기준 항목을 현실을 반영하여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충실성을 기하였다. 주요요소를 사명과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자료, 시설, 예산, 이용자봉사, 평가로 구성하여 다른 관종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그러나 1981년 발간된 이후 2013년 개정된 이 기준은 장애인도서관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자료실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며, 본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직원배치기준, 장서구성기준, 시설기준, 장비확보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표 1〉 참조).

예를 들어 〈표 2〉의 직원배치기준과 같이 기본인력으로 사서를 최소 3명 이상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정의에 대한 기술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서 3명, 총무 1명, 제작 3명, 교육 2명으로서 장애인도서관이 그 직원을 최소 8명 이상 배치할 것을 규정한 바, 이는 현재 장애인도서관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고, 앞서 살펴본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 기준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직원배치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임무가 장애인 정보서비스 이외에도 대체자료 제작 및 장애인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반면, 지역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자료실은 대체자료 제작 및 장애인 교육을 업무범위로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 도서관 이외에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 및 장애인 코너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 별도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장서구성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도서관의

〈표 1〉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기준 구성(한국도서관협회 2013)

주요요소	구성요소
1. 사명과 목적	1.1 사명 1.2 목적
2. 조직 및 인적자원	2.1 일반원칙 2.2 조직 2.3 인적자원
3. 자료	3.1 일반원칙 3.2 자료구성 및 기준
4. 시설	4.1 일반원칙 4.2 시설기준
5. 예산	5.1 일반원칙 5.2 배정기준
6. 이용자봉사	6.1 일반원칙 6.2 대출・열람봉사 6.3 참고・정보봉사 6.4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서비스
7. 평가	7.1 일반원칙 7.2 평가기준

www.kci.go.kr

〈표 2〉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기준 증 직원배치기준

구 분	기본인력(인)	증원인력	비 고
사 서	3명	장서 3만권당 1명 이용자 1천명당 1명 협력기관 20개관당 1명	-
총 무	1명	-	서무, 관리, 회계업무 담당
제 작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점역교정사 음성도서제작사 점자도서제작기능사
교 육	1명 이상 1명 이상	-	점자·평생교육사 보조공학사

문학자료는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전체의 1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대체자료가 문학자료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체자료 구성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래와 같이 자료의 종류를 특수한 형태의 단행본자료와 연속간행물로 구분하여, 특정 대체자료를 지칭하지 않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괄한 것은 향후 대체자료의 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도서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 장서수와 연간 증가수를 정의한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도서관은 최소 495㎡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자료공간 및 이용자공간은 독립건물의 경우 연면적의 46%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자료공간, 이용자공간, 직원공간, 공유공간에 대해 복합건물과 독립건물과 구분하여 그 구성비율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합리적인 공간구성의 기준으로 고려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표 4〉 참조).

장애인도서관에게 있어 장비(보조공학기기 및 독서보조기기)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장애인도서관서비스를 위한 장비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대체자료 제작 장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

〈표 3〉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기준 증 장서구성기준

자료종류	기본장서수	연간 증가수
특수한 형태의 단행본 자료	5,000종	500종 이상
특수한 형태의 연속간행물	40종	-
기타 자료	200점	100점 이상

www.kci.go.kr

〈표 4〉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기준 증 시설기준

공간요소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37	35
이용자공간	12	11
직원공간	38	34
공유공간	13	20

비까지 제시되어 도서관법 시행령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대부분의 장비 구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실내용 휠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및 진동식 호출기, 보청기 이외에 다양한 독서보조기기가 고려되어야 한다(〈표 5〉 참조).

2.1.3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2009)

이 기준은 2009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당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도서관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도서관이 처한 환경에 맞추어 장애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설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운영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구성요소만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는 '도서관 내・외부의 물리적 접근, 장서구축, 서비스와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모두 7가지이다. 7가지 주요요소 범주 하위에 세부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경우, 도서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와 도서관 비방문자에 대한 서비스가 모두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다소 선언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도서관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도서관 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표 5〉 한국도서관기준의 장애인도서관기준 증 장비확보기준

장비명	확보량	장비명	확보량
점자제판기와 인쇄기 또는 컴퓨터와 점자프린트기	2세트 이상	확대독서기	1대 이상
녹음기 또는 음성도서, 데이지 플레이어	5대 이상	실내용 휠체어	1대 이상
화면낭독프로그램	5대 이상	화상 전화기	1대 이상
점자정보단말기	1대 이상	진동식 호출기	1대 이상
		보청기	1대 이상

www.kci.go.kr

〈표 6〉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2009)의 주요 구성

주요요소	구성요소
1. 도서관 내·외부의 물리적 접근	건물로의 진입 도서관내 진입 엘리베이터, 안내데스크 및 대출데스크, 서가, 열람실,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2. 장서구축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3. 서비스와 프로그램	도서관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도서관 비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4.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청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체장애인 보조공학기기
5. 웹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웹접근성 유니버설디자인
6.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	
7.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따라 개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독서활동이나 문화강좌 등에는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인쇄물은 점자, 녹음 혹은 큰활자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의 특성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개념적인 이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앞서 분석한 다른 기준과 같이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표 6〉 참조).

2.2 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2.2.1 Libraries for the Blind in the Information Age, Guidelines for Development(IFLA 2005)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2005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목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듯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량적인 장서·시설·인력·장비 기준이라기보다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토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실제적인 구성요인뿐만 아니라 도입 및 역사, 서비스의 토대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위성 및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이용자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충족시킬 것을 제언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및 네트워킹, 장서개발, 서비스와 장서에 대한 접근, 대체자료의 제작, 운영 및 마케팅, 품질 보증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

www.kci.go.kr

〈표 7〉 IFLA(2005)의 시각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주요 구성

주요 요소	주요 내용
1. 도입	이 기준의 목적, 장애인도서관서비스의 변화, 기준의 중요성 및 국가간의 불균형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2. 역사	점자도서관의 역사, IFLA 점자도서관 분과(LBS)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다.
3. 서비스의 토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권리, 계속 학습의 문화는 장애인에게도 제공되는 사항이다. 이 장은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해온 가이드라인과 서비스모델 및 토대를 설명한다.
4. 이용자 관리: 이용자 요구의 충족	독서장애인은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은퇴한 노인이며, 일부는 학생이거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독서장애인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교와 가정 등 모든 종류의 다양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협력 및 네트워킹	장애인도서관이 특수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과 다르지 않다. 정보와 문서가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것처럼, 훌륭한 도서관은 항상 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부분으로서 기능해왔다. 모든 장애인도서관들은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덜 대중적인 장서들에 대해 상호대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훌륭한 전문가는 다른 장애인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실시하기 위한 저작권의 필요요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장서개발	도서관의 장서는 그 서비스의 중심에 있으며 사명의 반영이다.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서를 개발하는 것은 그 인구적 특성 및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독서장애인은 다른 이용자 집단과 같이 동일한 독서 요구를 가진 다양한 고객들이다. 그들은 대중적인 자료, 평생학습 또는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정보, 직업교육 정보, 아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단행본 등의 장서를 요구한다.
7. 서비스와 장서에 대한 접근	장애인도서관은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포맷의 정보와 여가를 위한 독서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8. 대체자료의 제작	장애인도서관은 독서장애인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포맷의 단행본, 문서 및 다른 유형의 콘텐트를 제작하는 주요 기관이다.
9. 운영 및 마케팅	장애인도서관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요구의 환경 속에서 리더십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 있으며, 잘 훈련된 관리자와 직원을 필요로 한다.
10. 품질 보증	도서관 운영은 서비스품질 보증 접근법과 일치하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보장하는 모델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가에 대해 의미 있는 토대를 제시해주고 있다(〈표 7〉 참조).

2.2.2 Revis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Service for the Library of Congress Network of Libraries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ASCLA 2011)

미국의 ASCLA(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에서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LC)의 하부조직인 시각 및 신체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NLS)에 소속된 네트워크 장애인도서관(지역관)을 위해 작성된 기준으로서 2011년에 개정되었다. 이 기준의 목적은 장애인도서관서비스와 활동, 직접적인 이용자서비스, 장서개발 및 관리, 아웃리치 서비스, 대체자료 제작 등의 항목에 대한 적절한 표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인력과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고려할 때 국내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운영기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LC/NLS의 협력네트워크는 56개의 지역도서관, 47개의 부지

www.kci.go.kr

역 도서관, 4개의 기기대출기관, 2개의 중앙관리센터와 LC/NLS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이 13개 항목의 표준과 2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지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표준 2.16/c.에서 LC/NLS는 매년 오디오자료는 최소 2천 종 이상, 점자도서는 최소 475종 이상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표준(Standards)
1. 서비스의 제공(Provision of Services)
2. 장서개발과 관리(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3. 교육 및 아웃리치서비스(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4. 상담서비스(Consulting Services)
5. 자원봉사 및 인턴십 프로그램(Volunteers and Internship Programs)
6. 행정 및 조직(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
7. 예산 및 재원(Budget and Funding)
8. 계획 및 평가(Planning and Evaluation)
9. 정책 및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
10. 보고(Reports)
11. 인력(Personnel)
12.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13. BARD(Braille and Audio Reading Download)

가이드라인(Guidelines)
1. 인력(Personnel)
2. 공간(Space)

가이드라인 중 인력과 공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히 상세한 수준으로 지역도서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직원의 유형을 전문사서, 독서지도사, 보조전문가, 기술직원, 보조직원으로 구분하고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인력배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표 8〉 참조).

공간의 경우 각 영역별로 최소크기와 함께 구비해야 할 공간의 구성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LC/NLS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대체자료 및 보조공학기기를 발송, 수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체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서가 기준 또한 다루고 있다(〈표 9〉 참조).

2.2.3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시청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 등을 위한 설비 및 운영규정'에 점자도서관 시설설비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사항으로 업무, 관리운영(점자도서 7천종 이상 구비), 설비, 직원의 자격, 열람료 및 우송료를 규정하고 있다(〈표 10〉 참조).

〈표 8〉 미국 LC/NLS 기준의 인력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직원의 유형	1. 전문사서: ALA 인증기관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소유 2. 독서지도사: 최소한 인증기관의 학사학위 이상 소유. 독서 지도사는 이용자의 독서유형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호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3. 보조전문가: 문헌정보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분야의 적절한 학위 또는 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스튜디오 관리, 제작 전문가, 정보 기술, 기술 서비스, 자원봉사자 관리, 아웃리치서비스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4. 기술직원: 장비 보수 및 관리, 시스템 지원 및 제작 서비스 5. 보조직원: 발송 및 수취 업무, 복사 서비스 및 접수대 업무

www.kci.go.kr

구분	내용
지역 도서관 인력배치기준	관리자 1인 이용자 4,000명당 전문사서 1인 이용자 2,000명당 독서지도사 1인 이용자 3,000명당 보조전문가 1인 이용자 2,000명당 기술직원 1인 이용자 1,500명당 보조직원 1인
부지역 도서관 인력배치기준	이용자 4,000명당 전문사서 1인 이용자 2,000명당 독서지도사 1인 이용자 3,000명당 보조전문가 1인 이용자 1,000명당 기술/보조직원 1인

〈표 9〉 미국 LC/NLS 기준의 공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공간	최소 크기 (squre feet)	㎡ 환산	비고
접수대 열람실	200	18.5	직원상주. 접수대 근처지역. 목록, 브로셔, 책, 잡지를 카세트 및 점자책으로 구비. 개인적 열람을 위한 이어폰이 있는 디지털 장비 및 카세트 장비가 갖춰진 탁자 포함.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작업공간	1명당 150~175	13.9~16.2	책상, 이용자 파일과 기록, 자동화 장비 및 통로가 필요
사무실	1명당 125	11.6	관리자를 위한 개인 오피스, 사서 공유 가능공간
녹음, 복사, 저장 공간	600	55.7	녹음실, 복사장비, 원본 및 빈 매체를 위한 선반 포함
발송 및 수취	1,500	139.3	발송 트럭이 접근 가능한 수하대 포함
장비 및 공급 보관	800	74.3	목록, 브로셔 및 3달간 기기 공급을 위한 보관공간
장비 청소, 진단, 수리	500	46.4	전기시설 및 네트워크 연결기능
회의실	500	46.4	-
직원휴게공간	300	27.8	-
서가	기준의 별도 표로 제시	-	1칸당 점자도서 12권, 98 카세트 콘테이너 등

〈표 10〉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점자도서관 시설설비 조항(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2010)

구분	주요 내용
업무	• 점자도서관은 점자간행물 및 맹인녹음물의 대출 및 열람봉사, 점역, 음역봉사, 독서장려,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관계행정기관 및 장애자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을 장려·추진한다.
관리 운영	• 점자도서 교양, 오락, 학술 등 전 분야에 걸쳐 7천종 이상 구비, 매년 신간도서 확보에 노력한다. • 다른 점자도서관과 협력하여 상호대차를 실시한다.
설비	• 사무실, 열람실, 녹음실, 프린트실, 청독실, 발송실, 서고, 상담실, 연수실, 기계실 • 도서대출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www.kci.go.kr

구분	주요 내용
직원	•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을 둔다.
	관장자격 •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로서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그 외 관장으로서의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사서자격 • 도서관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전문적 직무에 관한 학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점자지도원, 대출봉사원 및 교정원은 각각의 전문적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점자지도원, 대출봉사원 및 교정원은 각각의 전문적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열람료	• 공립 점자도서관은 무료로 하고 기타 점자도서관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우송료	• 우송료는 「우편법」에서 허용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인정받아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대출에서 발송료는 도서관이, 반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 기타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동일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발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2.3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분석 결과

〈표 11〉은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시설・장서・인적자원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내용에서 매우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법 시행령과 한국도서관기준의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커서 새로이 현실적인 기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표 11〉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비교

구분	시설	장서	인적자원
도서관법 시행령	- 건물면적 66㎡ 이상 -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5% 이상 - 기계・기구는 점자자료 제작기구 위주로 정의	- 1,500권 이상	- 시각장애인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
한국도서관 기준	- 최소 498㎡ 이상의 연면적 확보 - 복합건물의 경우 자료공간은 전체 면적의 37% 이상 - 장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위주 편성	- 기본장서수 5,000종 이상 - 연간 증가수 500종 이상	- 기본인력으로 사서 3명, 총무 1명, 제작 3명, 교육 2명 이상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 도서관 건물로의 진입, 도서관내 진입을 위한 시설 정의 -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정의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개설 -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지정 -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순환보직 예외

www.kci.go.kr

〈표 12〉는 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IFLA의 경우 각 영역에서 주의하여 규정해야 할 요소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미국 ASCLA의 기준은 LC/NLS 협력 네트워크 도서관의 자원과 현황을 고려하여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모든 기준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필요한 인적자원의 유형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필요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서관만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의 내용 또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건물면적 및 기계・기구의 구성사항, 장서의 유형 등 모두 최근의 장애인서비스 변화 및 대체자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한국도서관기준(2013) 및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2009) 등 실제적 또는 개념적으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 및 지침의 발간 노력이 있어왔으나, 도서관에서 실제적으로 반영할 만한 근거로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즉, 장애인 서비스의 사명과 구성요소를 참고할만한 내용은 제공되고 있지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장서구성 및 시설, 인력구성을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구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것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특히 중앙도서관과 협력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장서, 인력, 시설)에 대해

〈표 12〉 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 비교

구분	시설	장서	인적자원
IFLA	- 대체자료를 재생할 수 있는 독서보조기기를 제공하여 대체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 -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에 대한 도서관의 유지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독서장애인이 다른 이용자 집단과 동일한 독서요구를 가진 다양한 고객들의 한 부분임을 명시 - 대중자료, 교육정보 등 모든 연령대의 장서가 필요함을 강조	- 장애인서비스에 필요한 숙련된 전문성 있는 사서를 채용해야 하며, 사서에게 필요한 역할을 기술 - 장애인서비스 담당 사서에 대한 교육이 도서관과 대학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미국 ASCLA	- LC/NLS 협력 도서관의 경우 녹음・복사・저장공간을 55.7㎡, 접수대・열람실을 18.5㎡ 등으로 정의	- 매년 오디오자료는 최소 2,000종 이상, 점자도서는 최소 475종 이상 제작	- 인적자원을 전문사서, 독서지도사, 보조전문가, 기술직원, 보조직원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명시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	- 열람실, 녹음실, 청독실 등 필요한 시설 공간을 정의 - 도서대출 및 열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 점자도서를 교양・오락・학술 등 전 분야에 걸쳐 7,000종 이상 구비하며, 매년 신간도서를 확보 - 도서관간 상호대차 실시	- 인적자원을 관장,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으로 정의 - 관장과 사서의 자격을 별도로 정의

www.kci.go.kr

명시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공공도서관이 아닌 점자도서관만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직원 및 시설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성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국내장애인도서관 기준 관련 운영현황 분석

장애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도서관 관련 현황의 수준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운영기준의 합리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의 관련 조사 중 2013년의 전국도서관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에서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과 관련된 시설, 인적자원, 장서현황을 분석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시설의 경우 장애인도서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관 34개관 중 점자도서제작실 설치기관은 총 30개관이며, 녹음도서제작실 설치기관은 총 29개관이다. 장애인도서관의 평균 건물 연면적은 342.11㎡이고, 평균 좌석 수는 17.04석(27개관)으로 나타났다. 구비된 세부공간은 점자도서 제작실의 경우 평균 5.15개(30개관), 녹음도서 제작실은 평균 10.36개(29개관), 대면낭독실은 평균 3.48개(8개관), 열람실 면적은 평균 64.51㎡(25개관), 회의실 면적은 평균 19.34㎡(15개관), 컴퓨터실 면적은 평균 21.29㎡(12개관)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모두 20개관으로 58.8%를 차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충족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0개관,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기준의 양적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을 미충족하는 도서관이 무려 40%를 넘는다는 것은 도서관 규모와 이용자수에 따라서 지켜야 할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3〉 참조).

〈표 13〉 2013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현황 - 장애인도서관

구분		응답기관	평균
전체		34	-
평균	기관 건물 연면적	34	342.11㎡
	총 좌석 수	27	17.04석
열람실 유형	열람실	25	64.51㎡
	점자도서 제작실	30	5.15개
	녹음도서 제작실	29	10.36개
	대면낭독실	8	3.48개
	컴퓨터실	12	21.29㎡
	회의실	15	19.34㎡
설비	업무용 컴퓨터 수	34	8.65대
	이용자용 컴퓨터 수	28	3.79개

www.kci.go.kr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자료실을 설치하는 경우 총면적이 평균 79.73㎡이며, 장애인코너 설치의 경우 총면적 평균 59.46㎡로 나타나서 미국 LC/NLS 기준의 공간 기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전체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대비해 아직 장애인자료실과 장애인코너를 설치한 도서관 수가 많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총 이용좌석 수는 장애인자료실이 설치된 도서관은 15.36석(85개관), 장애인코너가 설치된 도서관은 9.6석(126개관)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장애인도서관의 직원현황을 살펴보면, 점역·교정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사, 사서직 순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사서직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도서관이 대부분 복지관의 내부 조직으로 존재해 왔으며, 대체자료 제작 업무에서 사서직보다는 점역·교정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조직의 경우 대체자료 제작보다는 정보서비스 위주의 업무 구성이므로, 장애인도서관의 인력구성과는 달리 사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 2급 직원은 전체 34개관 가운데 18개관(평균 1.22명), 점역·교정사 3급은 14개관(평균 2.14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사회복지사와 점역교정사가 근무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사서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항목은 57개 도서관에서 2급 사서직이 평균 1.33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통계조사는 해당 직원이 장애인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지 또는 타 업무와 병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추후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표 15〉 참조).

장서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점자도서(271개관, 36.7%), 큰글자도서(235개관, 31.8%), CD-ROM 녹음도서(134개관, 18.2%)를 주로 구비하고 있으며, 장애인도서관은 점자도서, 카세트 녹음도서, CD-ROM 녹음도서를 주로 보유하고 있다. 점자도서의 경우 장애인도서관 평균 2,013권, 공공도서관 평균 280권으로 대체로 모

〈표 14〉 2013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시설현황 - 공공도서관

구분		장애인자료실 설치 도서관		장애인코너 설치 도서관	
		응답기관	%	응답기관	%
전체		89	100.0	132	100.0
평균	총 면적(㎡)	75	79.73㎡	94	59.46㎡
	총 이용좌석 수(석)	85	15.36석	126	9.6석
세부공간 설치유무 (비율)	대면낭독실	9	10.6	5	3.8
	영상실	8	9.4	8	6.1
	정보검색대	62	72.9	64	48.5
	열람석	76	89.4	109	82.6
	점자도서 제작실	8	9.4	1	0.8
	녹음실	6	7.1	1	0.8

www.kci.go.kr

〈표 15〉 2013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직원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응답기관	평균(명)	응답기관	평균(명)
정규직	사서직	1급	12	1.33	5	1.00
		2급	57	1.33	18	1.22
		준사서	8	2.00	10	1.20
	사회복지사	1급	1	1.00	10	1.70
		2급	1	1.00	21	1.71
	점역·교정사	1급	0	0.0	5	1.40
		2급	0	0.0	5	2.00
		3급	1	1.00	14	2.14
	수화통역사		0	0.0	0	0.0
	농통역사		1	1.00	0	0.0
	기타 직렬		24	2.08	19	2.00
비정규직			17	2.47	8	2.75

〈표 16〉 2013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장서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응답기관	%	평균	응답기관	%	평균
전체			738	100.0	-	34	100.0	-
점자자료	점자도서	종	271	36.7	280.22	29	85.3	2,013.40
		권(점)			441.03	31	91.2	21,382.70
	묵점자 혼용도서	종	24	3.3	86.50	29	85.3	76.77
		권(점)			144.64	31	91.2	105.56
	점자라벨 도서	종	66	8.9	202.50	29	85.3	217.36
		권(점)			204.05	31	91.2	431.41
	전자점자 파일	종	4	0.5	561.00	29	85.3	2,432.85
		권(점)			480.00	31	91.2	3,553.44
영상자료	화면해설 영상자료	종	35	4.7	83.11	29	85.3	81.40
		권(점)			82.43	31	91.2	165.11
	수화&자막 영상자료	종	6	0.8	44.40	-	-	-
		권(점)			87.40	-	-	-
	수화영상 자료	종	14	1.9	54.91	-	-	-
		권(점)			60.00	-	-	-
	자막영상 자료	종	21	2.8	2,280.95	-	-	-
		권(점)			2,137.10	-	-	-
음성자료	카세트테이프 녹음도서	종	56	7.6	863.53	29	85.3	2,896.42
		권(점)			2616.33	31	91.2	7,411.18
	CD-ROM 녹음도서	종	134	18.2	343.40	29	85.3	1,247.24
		권(점)			464.24	31	91.2	1,546.82
	MP3 녹음파일	종	33	4.5	303.63	29	85.3	2,633.81
		권(점)			397.84	31	91.2	5,417.28
	데이지(DAISY) 자료	종	19	2.6	266.67	29	85.3	6,976.25
		권(점)			287.58	31	91.2	6,885.92

www.kci.go.kr

구분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응답기관	%	평균	응답기관	%	평균
기타 자료	촉각도서	종	41	5.6	33.88	29	85.3	40.00
		권(점)			34.38	31	91.2	44.06
	큰글자도서	종	235	31.8	105.22	29	85.3	78.08
		권(점)			125.41	31	91.2	89.56
	보이스아이북	종	14	1.9	28.33	29	85.3	47.33
		권(점)			30.64	31	91.2	10.75
	투웨이북	종	1	0.1	546.00	-	-	-
		권(점)			1,871.00	-	-	-
	쉽게 쓴 책	종	4	0.5	57.33	-	-	-
		권(점)			86.75	-	-	-

든 유형의 장서에서 공공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에 비해 상당히 소규모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영상자료 및 기타자료 등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장서를 구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6〉 참조).

4.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제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현재 운영기준과 함께 현재 도서관 관련 현황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설계를 위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최소기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법에서 규정할 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도서관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유관단체의 주관 하에 장애인도서관의 운영규모별로 세부기준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의 기준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실무적인 기준은 단기적인 개정이 용이하다는 점도 한 이유이다.

둘째, 기준 정의 이전에 장애인이용자 요구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준 적용의 당사자인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이용자의 의견수렴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설, 장서,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장애인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중앙도서관과 네트워크도서관의 협력체제가 가동되기 전에는 미국 ASCLA의 사례와 같은 지역 장애인도서관의 세부기준이 중앙통제식으로 제정되고 실효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도서관 관련 단체의 실질적인 장애인도서관 운영기준이 연구되고 장기적으로 이 기준을 기반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자료실 등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적용 가능한 운영기준체계를 설정해 나가는 단계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개발되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

www.kci.go.kr

영기준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및 평가지표와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기준이 통계 및 평가지표와 연계되어야 선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적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장 도서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운영기준과 권장 사항이 확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틀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섯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 기준(장서 1,500권 이상, 녹음테이프 500점 이상)을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면적을 대체자료제작공간, 자료열람실, 서고로 구분하고 기계 및 기구 또한 대체자료 제작장비와 독서보조기기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등 최근의 장애인서비스 변화에 맞게 시행령 또한 개선하여야 한다. 사서배치기준에서 현재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사서 1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각장애 이외에도 청각 및 지체 등 장애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사서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서 이외의 전문인력(점역교정사, 수화통역사 등) 배치 또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 기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을 설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우선 국내의 장애인서비스 운영기준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도서관만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의 내용 또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도서관기준(2013) 및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2009) 등 실제적 또는 개념적으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 및 지침의 발간 노력이 있어왔으나, 도서관에서 실제적으로 반영할 만한 근거로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즉 법적 기준과 관련 기관의 운영기준 모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해외의 경우 각국의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상황에 적합한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해당 사례들을 참고하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국내외 현황 분석결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최소기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소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및 평가지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평가업무 연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준 적용의 당사자인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이용자의 의견 수렴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 유형별 및 도서관 규모별로 적용 가능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연구가 이용자연구를 기반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참 고 문 헌

[1] 강숙희. 2011.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97-123.

[2]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9.『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서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3] 국립중앙도서관. 2010.『한국도서관기준 개정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4] 국립중앙도서관. 2012.『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5] 국립중앙도서관. 2013.『2013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6] 김보일. 2006.『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7] 김영기, 이연옥. 2008.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87-108.

[8]『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49호 (2014. 8. 12, 일부개정 2014. 8. 12).

[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0] 박종배. 2013.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71-92.

[11] 배경재. 2014. 장애인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4년 10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2] 배경재. 2015. 보편적 권리로서의 도서관.『오늘의 도서관』, 235: 34-36.

[13] 송경진, 이정은, 손지영. 2013. 사례와 면접을 통해 본 국내 공공도서관의 지적장애인서비스.『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197-219.

[14]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15] 장덕현. 2012.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193-210.

[16] 장보성. 2015. 청각장애 대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정보요구에 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2(1): 297-316.

[17] 한국도서관협회. 2013.『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8]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05. *Libraries for the Blind in the Information Age Guidelines for Development*. Den Haag, Netherland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www.kci.go.kr

[19]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2011. *NLS Technical Circulars Revis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Service*. Washington: National Library Service. [online] [cited 2015. 8. 1.] <http://www.loc.gov/nls/networkdocs/standards2011.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ng, Sook-Hee. 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ypes of Disabil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7-123.

[2] National Library Supporting Center for the Disabled of Korea. 2009.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Seoul: National Library Supporting Center for the Disabled of Korea.

[3]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0. *A Study on Library Standards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4]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National Library Disability Services Surve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5]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2013 National Library Disability Services Surve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6] Kim, Bo-Il. 2006. *A Study on the Guidelines Application of the Public Library Facilities for Users with Disabilities*. M.A. thesis, Daegu University.

[7] Kim, Young-Ki and Lee, Yeon-Ok. 2008. "Constituents Analysis of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ibrary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87-108.

[8]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25549 (August 12, 2014, Partially Amended August 12, 2014).

[9]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Second Library Master Plan (2014-2018)*.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10] Park, Jong-Bae. 2013.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Level of Service on Academic Library User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71-92.

[11] Bae, Kyung-Jae. 2014.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Library for the Disabled." In *Proceedings of the 51th KLA General Conference, the Korean Braille Library Association*

www.kci.go.kr

Seminar, October 30, 2014, Gwangju: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12] Bae, Kyung-Jae. 2015. "Library as Universal Rights." *Today's library*, 235: 34-36.

[13] Song, Kyeong-Jin, Lee, Jueng-Eun and Son, Ji-Young. 2013. "Case Studies and Interviews to Review Public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197-219.

[14]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15] Chang, Durk-Hyun. 2012.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Service Agenda for the Core Information-Poor in Busan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193-210.

[16] Jang, Bo-Seong. 2015. "An Analysis on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Needs of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297-316.

[17]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Hangukdoseogwangiju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www.kci.go.kr